

제7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

• 일시 : 2023년 12월 23일(토) 14시

• 진행방식 : 온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 ZOOM

bit.ly/제7회연구자복지법토론회



오프라인 : R커먼즈합정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안길 18, 씨티빌딩 2층)

• 사회 : 김민환(한신대학교)

• 발표

연구자공제회법의 취지와 성격 _정두호(대학원생노조)

연구자공제회법안의 구조와 내용 _윤희상(대학원생노조)

• 토론

김명하(민교협)

남정희(교수노조)

박중렬(비정규교수노조)

이미애(연구자의집)

정진영(R커먼즈)



목 차

- 발표 1 : 연구자공제회법의 취지와 성격
정두호(대학원생노조).....1
- 발표 2 : 연구자공제회법안의 구조와 내용
윤희상(대학원생노조).....7

연구자 공제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자 공제회를 설립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불안정 연구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정 연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을 운영하고 연구자를 양성·교육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의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에 재학·수료 등을 하거나 한 자를 말한다.
3. 대학에 두는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의 설치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1항에 따른다.
4.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연구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연구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연구 및 교육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연구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자 공제회

제3조(법인격과 설립)

- ① 연구자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제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정관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창립총회의 공고·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사유 등 공제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 ① 공제회는 그 명칭 중에 연구자 공제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연구자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정관의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의 “연구자”에 포함되는 사람
 - 2. 전업대학원생 (대학원에 다니는 직장인 제외)
 - 3. 5년 내 대학강의를 3학점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는 고등교육 종사자
 - 4. 국내외 학술지에 5년 내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연구자(학술지는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SSCI, A&HCI, SCOPUS 등재지, 기타 연구재단 비등록 학술지 중에서도 그 학문적 성격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거나 심사요건을 갖춘 학술지)
 - 5. 단행본과 번역서적의 출판 경력이 있는 연구자(최근 5년 내 1권 이상, 학술서적에 한정)
 - 6. 그 밖에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고 공제회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
-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대의원)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 계획 및 예산
 - 4.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⑥ 그 밖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3.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한 사항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8조(재정)

- ① 공제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부담금
 2. 연구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5. 기타 기부금 및 연대기금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제사업

제24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연구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제회의 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 3. 적립된 공제부금 증식을 위한 사업
 - 4.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 5. 연구자의 사회기여를 위한 교육 및 정책연구 사업
 - 6. 연구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7. 공제회의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공제회는 제1항 제5호와 6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제2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고등교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을 하는 사업주는 그 고등교육의 사업시작일부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고등교육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고등교육 완료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제27조(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고등교육의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연구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진 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제29조(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① 사업주는 피공제인의 납부에 대응한 금액을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한다.

② 금액과 납부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가의 공제부금 보조) ① 국가는 피공제인의 납부에 대응한 금액을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금액과 납부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와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2.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연구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필요 서류와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반환요구 등)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제35조(퇴직공제의 탈퇴) 제26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4장 벌칙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일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자공제회법」 법안의 취지와 성격 및 내용 (윤희상)

「연구자공제회법」 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바, “연구자공제회를 설립하여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불안정 연구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정 연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생’이라는 용어에 한정하였을 때에는 법리적으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의 대학원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제1항에서 정의된바,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인 일반대학원의 전일제 대학원생은 ‘학생’이나 ‘학습자’의 지위와 신분으로만 이해되기가 쉽다. 그러나 “지식 장의 구조변동에 관여하는 물질적, 상징적 권력관계가 각축하는 몸체”라는 추상화된 정의를 구태여 내리지 않더라도, 2000년대 이후 국가와 기업화된 대학의 복합체를 탄생시킨 학진 체제 아래 대학원생이 “지식 공장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했음은 얼핏 자명해 보이기까지 한다.¹⁾ “국가는 지식생산을 사업 형태로 관리하고, 기업화한 대학은 글로벌 차원의 대학 경쟁에 연구 인력을 동원한다. 교수가 연구지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의 구체적 실행은 박사급 연구원들과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분배된다”²⁾는 주장, 즉 대학원생들은 이미 지식 장의 구조변동과 대학의 구조조정 정세 등에 따라 대학-기업-국가의 지식재생산 메커니즘에 포획되어 하청 노동을 수행한다는 급진적 주장에서부터, 대학원생은 ‘조교’나 ‘연구자’ 등의 역할을 지니지만 그 외에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생’,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며] (...) 실제 수행하는 역할로는 ‘잉여’라기보다는 ‘불안정 노동자’에 가까웠다”는 실제적 경험의 조사로부터 내려진 주장도 있다.³⁾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간접비 납부를 통해 많게는 사립대 한 해 예산의 삼분의 일 가량을 충당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학과 운영과 행사 전반의 추진에 필수적인 행정 및 살림살이, 대형 강의에 따르는 수강생의 출결 관리, 채점, 각종 상담 등의 수업 보조”⁴⁾ 등, 대학원생은 학생인 동시에 일을 하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이때의 ‘노동’은 “대학원 생활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한 ‘노동자’로서의 역할”⁵⁾을 대학원생에게 부여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은 단순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worker)’을 넘어서진 범주를 요청한다. 상술한 문제의식의 연장에 있되 「연구자공제회법」의 적용 대상인 ‘연구자’는 학교 내 ‘대학원생’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법안은 주로 학교 내 ‘사업’ 중심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존 ‘학술진흥법’을 넘어서 학교 밖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자 복지법을 공제회법 형태로 구상해보고자 하는 제안이다. 한국에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법적 보호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로자’와 ‘자영인’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결정”⁶⁾되므로 법적 근로자에 속하지 않았다면 보호로부터 일체 배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학술지식장의 연구자들은 당위적 영역을 떠나 법리적인 ‘근로자/노동자’의 해석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사립학교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교원과 직원뿐이다.⁷⁾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들을 위한 물질·

1) 정민우, 「지식 장의 구조 변동과 대학원생의 계보학, 1980~2012」, 『문화와사회』 14, 2013, 7~8쪽.

2) 위의 글, 9쪽.

3) 김선기·이상길, 「어떻게 ‘문화연구자’가 되는가?」, 『언론과사회』 22(4), 2014, 117~119쪽.

4) 구슬아, 「대학의 구조적 관성의 역사와 연구자 공동체의 개입하는 주체사」, 『역사문제연구소 회보』 (62), 2019.03.12.

(http://kistory.or.kr/bbs/board.php?bo_table=story2&wr_id=26&subPage=520&page=2&sca=) (최종 검색일: 2023.11.14.)

5) 김선기·이상길, 앞의 글, 148쪽.

6) 장진화·손정순·이향숙,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플랫폼노동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0-0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0, 2쪽.

인적 지원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 구축 또한 더딘 상태인데,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지원할 전문법령은 현재 전무한 형편으로, 지금까지 2021년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 ‘기초학술기본법안’, 2022년 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기초학술기본법안’, 그리고 2023년 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이 제시되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이후 마련되지 않았다. 공제회법의 제정 절차는 기본법 제정 절차보다 간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주요국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고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서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보장제도”⁸⁾인 공제(사업)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공제회법은 불안정 연구자의 보호방안 중 하나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연구자의 상호부조, 상호 간 신뢰와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제상품은 국가의 지원을 상대화할 수 있으며, 공제회·공제상품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비영리로 인한 저렴한 상품비용과 낮은 사업비”라는 장점 외에도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한 신속한 공제급부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⁹⁾ 본안은 따라서 연구자공제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투명성,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핵심적임에 따라 제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법안에서 ‘연구자’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의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에 재학·수료 등을 하거나 한 자”를 가리키며 다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안은 제7조(회원의 자격)에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4조(공제사업의 실시) 조항을 근거로 공제사업 실시를 밝히고 있다. 제25조(공제회의 사업)에는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외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제26조(퇴직공제의 가입)부터 제38조(시효)까지 가입, 지급, 증명, 반환요구, 탈퇴 등의 조항과, 제4장의 처벌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노동자공제회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의 단체들은 제각기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안정한 지위와 신분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의 생산·유통·축적 전반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연구자들의 상호부조와 그로 인한 대안적 안전망의 마련은 따라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공제회법은 일반적으로 공제상품이 사업으로 삼는 퇴직연금, 경조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 접근 및 이용 지원, 연구 공간 지원, 긴급 생계 자금 대출 및 지원, 돌봄과 상담 지원, 법률 자문 지원 등을 사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료연구생 신분을 포함한 논문학기의 지원이나 생애주기별 필요자금의 대출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계열 박사과정생에 한정된 FGI 결과의 분석이 었지만, “박사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박사과정생이 가장 많았”다는 결론은 뼈아프다.¹⁰⁾ 본 법안은 한국의 불안정 연구자들의 현실을 특정 제도에 국한하지 않되 더욱 포괄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시도다. ‘한국의 불안정 연구자 지원 모델’이랄 것은 어떤 모델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기준의 설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공제회법안의 마련은 단순히 상호부조를 통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문후속세대가 지향해야 하는 연구는 무엇인지, 또 연구자들이 지향해야 할 연대의 네트워크는 무엇인지와도 닿아있을 것이다.

7) 서울고법 2007.11.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8) 岡田太, 「生協共済のビジネスモデル」, 『協同組合研究』 29(3), 2010 참조. (장진희·손정순·이향숙, 앞의 글, 25쪽에서 재인용)

9) 장진희·손정순·이향숙, 앞의 글, 29쪽.

10) 송경호·김현, 「한국 대학원 인문·사회 계열 박사과정생의 현실-연구 환경, 연구자 네트워크, 연구자 정체성과 연구 능력」, 『역사비평』 (144), 2023, 242~243쪽.